

10. 20

서울특별시보

등록번호 제39호
 등록년월일 1959년 6월 18일
 발행인 서울특별시보 기획과
 편집인 공인
 인쇄 서울

차례

△ 조 칙	3
제 599 호 서울특별시 관광휴게소 조례	
△ 규 칙	4
제 858 호 서울특별시 직제중 개정	
제 859 호 서울특별시 경찰서 조직규칙중 개정	
제 860 호 서울특별시 소방서 조직규칙중 개정	
제 861 호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시행규칙중 개정	
제 862 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	
제 863 호 서울특별시 직제중 개정	
제 864 호 서울특별시 경찰서 조직규칙중 개정	
△ 훈 령	20
제 262 호 서울특별시 경찰서 파출소 외근경찰관 성적평가 규정	
△ 사 령	40
△ 교 시	76
제 82 호 도시계획소로 일부 변경	

- 제 83 호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지내 가토 일부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 제 84 호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 집행자 변경
- 제 85 호 사료 구분 등록

△공 고 80

- 제 243 호 환지 일부 변경
- 제 246 호 수유지구 청산금액 결정 통지서 공시송달
- 제 248 호 세목 공고
- 제 253 호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 실시
- 제 254 호 분묘이양 공고
- 제 255 호 세목 공고
- 제 258 호 김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 실시
- 제 261 호 세목 공고
- 제 264 호 청산수입 독촉장 공시 송달
- 제 265 호 청산수입 독촉장 공시 송달
- 제 266 호 세목 공고

조 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 관광휴
계소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우

1969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조례제 599호

서울특별시 관광휴계소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내외관광객을 위하여 설치
한 관광휴계소(이하 「휴계소」라 한다)를 효율적
으로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 이 휴계소는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관리케
할 수 있다.

제3조 (사용료) ①휴계소내의 번소는 다음의 사용료
를 징수한다.

1. 대 인 1회 5원
2. 소 인 1회 3원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한의 사용료
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969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규칙제 858 호

서울특별시직제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3 조제 2 항제 3 호 「아」 다음에 「자」를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자. 민방공 기구조직 및 운영

제 54 조제 2 항제 2 호 「사」를 삭제하고 「아」「자」「차」「카」「타」「피」「하」「거」「너」를 각각 「사」「아」「자」「키」「카」「타」「하」「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경찰서 조직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

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969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규칙제 859호

서울특별시경찰서조직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경찰서 조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교동제를 삭제하고 동조동항동호
다음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항제3호를 제4호로 제4.5.6호를 각각 5.
6.7호로 한다.

3. 교동과에는 교동제를 한다.

별표 1 중 보안과교동계 분장사무를 삭제하고

동표 1 중 보안과소년계 다음에 교동과교동계 분장사무
를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과 별	계 별	분 장 사 무
교 동	교 동	1. 교동경찰관 제도교양감독에 관 한 사항 2. 교동소능 3. 교동법규위반자 지도감독에 관 한 사항 4. 교동사고처리 5. 교동안전시설관리 및 안전대책

		에 관한 사항
		6. 차량행정처분 집행에 관한 사항
		7. 어린이교통 경찰운영에 관한 사항
		8. 교통순찰대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교통안전사무에 관한 사항
동표1	경비과 작전	경비계 분장사무중 10, 11, 12, 13, 14, 15, 16, 17, 18 월 소거하고 19, 20, 21, 22, 23 월 각각 10, 11, 12, 13, 14로 한다.
동표1	경비과방위계	분장사무중 # 6 # 다음에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과별	계별	분 장 사 무
경비	방위	7. 비상공기구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방공경보 및 감시에 관한 사항
		9. 방공사상, 선전, 제몽에 관한 사항
		10. 소개(난민)교통에 관한 사항
		11. 중요물자와 인신방호에 관한 사항
		12. 방독구호에 관한 사항
경비	방위	14. 지방방공단체에 관한 사항
		15. 방공 단속지도에 관한 사항
		16. 응급구호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소방서 조직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유

1969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규칙제860호

서울특별시소방서조직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소방서조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소방과소방1 분장사무중 13월 19로 하고 18월 다음과 같이 삼입한다.

18. 연금에 관한 사항

동표1 소방과 장비계 분장사무중 7월 삭제하고 8.9.10.11.12.13.14.15.16.17.18월 각각 7.8.9.10.11.12.13.14.15.16.17로 한다.

동표1 방호과방호계 분장사무중 10월 삭제하고 11.12월 각각 10.11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표창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969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규칙제 861호

서울특별시표창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표창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2만원 이내"를 "5만원 이내"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969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규칙제 862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표중 다음과 같이 한다.
3급감류란 "지방행정서기관 9"을 "10"으로 하고
"제 25"를 "26"으로 한다.

3급출류란 지방행정사무관 207을 209로 지방
방건축기과 12를 14로 하고 제362를
366으로 한다.

4급출류란 지방행정주사 667을 669로 지방
지적기사 3을 6으로 하고 제1063을
1068로 한다.

4급출류란 지방행정주사보 584를 589로 하고
제1111을 1116으로 한다.

5급출류란 지방행정서기 1143을 1148로 하고
제1816을 1821로 한다.

5급출류란 지방행정서기보 1696을 1702로
지방지적기원보 6을 3으로 하고 제2591을
2594로 한다.

합계란 1급내지 5급제 6979을 7002로 기능
직공무원 제 433을 426으로 고용원제 1334을
1340으로 하고 합계 9053을 9075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김 철 욱

1969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규칙제 863 호

서울특별시직제증개정규칙

서울특별시직제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제 1 항중 「통계과장은 통계서기관」을 통계과장은 「행정서기관 또는 통계서기관」으로 한다.

제 12 조제 2 항제 5 호 「직제 분장사무중」아. 「지번책정」을 신설한다.

제 1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4 조 (도시계획국) ①도시 계획국에 사무과, 도시계획과, 구획정리과, 경축제 1 과와 건축제 2 과를 둔다.

②국장은 시설기술 또는 시설부기장으로 사무과장과 건축제 1 과장은 행정서기관으로 도시계획과장과 구획정리과장은 도목기술원으로 건축제 2 과장은 건축기점으로 보한다.

제 16 조제 2 항제 4 호 「도로계획계 분장사무중」라. 사도측조 및 폐도에 관한 사항」을 「라. 사도측조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 18 조와 제 18 조의 2 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8 조 (건축제 1 과) ①건축제 1 과에 건축행정계와 건축개발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건축제 1 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행정계

가. 공영주택건설의 종합계획

- 나. 아파트건설사업소의 법제 예산안의 조정
- 다. 아파트건설사업소의 주택건설자금 기체 및 상환에 관한 지도
- 라. 주택의 통제
- 마. 택지조성에 관한 사항
- 바. 상가아파트에 관한 사항
- 사. 구청의 건축영점지도
- 아. 과내 타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건축개량제

- 가. 무허가건축물 정리
- 나. 철거민 수용
- 다. 불량주택의 개량계획
- 라. 기타 무허가건물 및 불량주택 정리에 관한 사항

제 18 조의 2 (건축제 2 과) ①건축제 2 과에 서무계, 건축제 1 계와 건축제 2 계를 두고 서무계장은 지방청경사 무관으로 건축제 1 계장과 건축제 2 계장은 지방건축기 과보 보한다.

②건축제 2 과의 계별분장사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무계

- 가. 건축에 관한 제증명 발급
- 나. 건축에 관한 각종통계
- 다. 건축에 관한 소원 소송처리

라. 건축사지도

마. 건축법 및 기타 규정의 심사 조정

바. 파내 타계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건축제 1 계

가. 일반건축물허가 및 준공검사

나. 용벽 및 공작물에 관한 허가 및 준공검사

다. 건축선 지정

3. 건축제 2 계

가. 특수건축물허가 및 준공검사

나. 석축허가 및 준공검사

다. 공공건축물에 관한 사항

라. 구조에 관한 심정

제 2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3 조 (보건사회국) 1) 보건사회부에 사회과, 보건제 1

과, 보건제 2 과, 의약과와 부녀과를 둔다.

① 국장은 행정이사관 또는 행정부이사관으로 사회과장
보건제 2 과장과 부녀과장은 행정서기관으로 보건제 1 과
장은 행정서기관 또는 보건기점으로 의약과장은 의무기
점으로 보한다.

제 24 조제 2 항제 1 호 사회계 분장사무중 * 바. 시립전당

포의 운영감독 * 을 삭제하고 동조동항제 2 호 * 아 * 중

* 노동회관 * 을 * 근로복지관 * 으로 한다.

제 2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5 조 (보건계 1 과) ① 보건계 1 과에 보건행정계, 환경
 위생계, 방역계와 보건지도계를 두고 보건행정계장과
 환경위생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방역계장은 지방
 보건기과로 보건지도계장은 지방보건기과 또는 지방
 간호기과로 보한다.

② 보건계 1 과의 계별문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행정계

가. 보건행정의 종합조정

나. 보건소, 위생시험소, 방역사무소, 장제장 및 보
 지사무소운영의 지도감독

다. 과내 타계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환경위생계

가. 환경위생업소 허가

나. 환경위생업소 위생검찰

다. 이용사, 미용사의 양성과 자격

라. 대기 및 하천오염대책에 관한 사항

마. 공해방지 및 특수공해대책에 관한 사항

바. 공해업소의 지도감독

3. 방역계

가. 각종 질병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나. 법정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청호 및 공설공중탕 관리

4. 보건지도계

- 가. 산업보건, 모차보건 및 보건간호사업 지도
- 나. 기생충의 구제와 예방
- 다. 가축계퇴지도
- 라. 시민건강 운동
- 마. 정신위생, 우생보호

제 26 조를 제 27 조로 하고 제 26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6 조 (보건제 2 과) ① 보건제 2 과에 식품위생제와 식품지도제를 두고 제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보건제 2 과의 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위생제

- 가. 식품위생업소 허가
- 나. 영양사 및 조리사의 양성과 자격
- 다. 파내 타제주권이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식품지도제

- 가. 시민영양의 개선조사, 식생활의 지도
- 나. 식품위생의 지도
- 다. 각종 식품위생업소 위생검찰
- 라. 부정식품 단속

제 3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2 조 (산업국) ① 산업국에 상무과, 공업과, 연료과, 농정과, 양정과, 물동간계과와 녹지과를 둔다.

② 국장은 행정이사관 또는 행정부이사관으로 녹지과

장은 행정서기관 또는 임업기정으로 물동경제과장은
재경서기관 또는 행정서기관으로 기타과장은 행정서
기관으로 보한다.

제 3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3 조 (상무과) ① 상무과에 상정제, 도매시장제와 제
량제를 두고 상정제장과 도매시장제장은 지방행정사
무관으로 제량제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기계
기과로 보한다.

② 상무과의 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정제

- 가. 국소관 행정의 통합조정
- 나. 일반시장에 관한 사항
- 다. 일반시장 및 백화업 개설허가
- 라. 시장관계 사단법인 설립허가 및 감독
- 마. 국내 서무와 국내 타과계주관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

2. 도매시장제

- 가. 도매시장운영 및 지도감독
- 나. 도매시장우보지 선정 및 개설
- 다. 도매시장 개발계획수립 및 품목조정
- 라. 회전기금 운영
- 마. 상공회의소 지도감독
- 바. 기타농협 및 수급공판사업과 연관된 사항

3. 제향제

가. 제향의 연구 및 조사

나. 제향기념사 및 기념

다. 예타법실시에 관한 사항

라. 제향기 사업관리

제 35 조의 2 를 제 35 조의 3 으로 하고 제 35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5 조의 2 (물동경제과) ① 물동경제과에 분석제와 소비자보호제를 두고 제정본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물동경제과의 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석제

가. 물가조사 분석

나. 물가동향 분석

다. 물자수급계획의 조정

라. 공공요금의 심사조정

마. 서울특별시 시민경제대책위원회 운영

바. 과내 타계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소비자보호제

가. 유통구조의 개선

나. 물가의 조정 단속

다. 소비자보호

라. 경찰계설시 및 시범점포운영

마. 상도의 양양

제 36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6 조 (건설국) ①건설국에 관리제 1 과, 관리제 2 과,

토목과, 포장과, 하수과와 영선과를 둔다.

②국장은 시설기장 또는 시설부기장으로 관리제 1 과
장과 관리제 2 과장은 행정서기관으로, 토목과장, 포장
과장과 하수과장은 토목기장으로 영선과장은 건축기
장으로 보한다.

제 37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7 조 (관리제 1 과) ①관리제 1 과에 건설행정계, 보상
계와 중기관리제를 두고 계장은 지방경찰서장부관으로
보한다.

②관리제 1 과의 제별분장사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행정계

가. 국소관 행정 및 예산의 송급조정

나. 건설공사용 기재의 구입 조정과 출납

다. 건설업자의 지도육성 및 감독

라. 국소관사립소의 지도감독

마. 과내 사무와 국내 다과계주관이 협력하여 처리
하는 사항

2. 보상계

가. 도시계획사업에 수반한 사유재산의 수용과 보
상 및 지적정리 (제토지구획정리 및 택지조성사
업)

3. 중기관리제

- 가. 건설공사용 각종 중기의 등록
- 나. 건설공사용 각종중기의 검사
- 다. 중기관계 각종증명의 발급
- 라. 건설공사용 중기의 구입 정비운영 및 출납
- 마. 기타 중기에 관한 사항

제 37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7 조의 2 (관리제 2 과) ① 관리제 2 과에 시설관리제, 공지관리제와 유효도로제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제 2 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관리제

- 가. 지하도 및 지하상도 유지관리
- 나. 지하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 다. 육교 입체교차로 및 가-드레일 유지관리.
- 라. 도로상의 참에불 정리
- 마. 과내 타계종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공지관리제

- 가. 도로, 하천, 구거 및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허가 및 관리
- 나. 소개지에 관한 사항
- 다. 도로의 폐도
- 라. 도로수익자부담금, 하천부지점용료, 도로사용료의

부과 및 지도감독

3. 유료 도로제

- 가. 유료도로의 운영
- 나. 유료도로 수입금의 세입
- 다. 유료도로관리인의 인사 브수
- 라. 기타 유료도로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경찰서조직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김 현 국

1969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규칙제 854호

서울특별시경찰서조직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경찰서조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경찰관 파출소의 명칭 위시와 단장구격요중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서부경찰서내초파출소 위치단중 "내초동13의1"을 "내초동10의6"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훈령제 262호

경 찰 국
경 찰 서

서울특별시 경찰서 파출소 외근경찰관 성적평가규정
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우

1969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경찰서파출소

외근경찰관성적평가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근경찰관의 업무실적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 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외근경찰활동을 강화하고 능률
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외근경찰관이라 함은 파
출소에 근무하는 경위이하의 경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배제) ①일정한 행정관할이 없거나 임무
가 특정된 외근경찰관에 대하여는 그 임무의 특수
성에 따라 해당사항에 한하여 참고 평점하되 이
규정의 상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0 일이상 국내외서찰 및 교육훈련중에 있는자
2. 10 일이상 유계결근 또는 타부서 보근자
3. 타부서에서 전입 또는 타부서 진출로 10 일이상
유교자

제 4 조 (평점관리의 원칙) ①평가는 외근업무의 선반
을 대상으로 한다.

②평가대상별 항목은 실적 및 자질면으로 분류하여
비점을 달리한다.

③평가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등
점사항과 감점사항을 구분 병합 평가한다.

④특점대상분포에 따른 편차를 조사하기 위하여 가
출소등급제를 채택 운용한다.

⑤시범기능의 제도적 개선과 예비군 운영을 강화하
기 위하여 많은 배점을 부여한다.

⑥검지양정미달의 감독상 적발사항은 감점하고 포상
미달의 권장사항은 가점함으로써 감독의 실효를 거
두도록 한다.

⑦실지주의의 결점과 감제능력의 보완책으로 외근주
관자 (외근주관과장 및 외근계장) 및 경찰서장의
재량특점을 인정한다.

제 5 조 (근무성적평점표) 외근성적평점표 (이하 평점표
라 한다)는 별표1에 의한 파출소장 평점표와 별
표2에 의한 파출소 직원평점표로 구분 작성한다.

제 6 조 (평점자와 확인자) 평점자는 경찰서의 외근 주
관계장이 되고 1차확인자는 기능별 해당과 계장이
2차확인자는 외근주관과장이 된다.

제 7 조 (평점의 시기) 평점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실적을 익월에 실시한다.

제 8 조 (평점의 시기와 총기) 평점은 매년 10월 1일
을 시기로 하여 익년 9월말일을 총기로 한다.

제 9 조 (평점) 평점은 과출소를 각각 에이, 비, 시급
으로 구분채점하여 별표 1, 2 평점자에 의하여 채
점한다.

제 10 조 (등급기준) ① 과출소의 등급은 별표 2의 평점
표에 의하여 용이하저 50점을 득점할 수 있는 관
할구역일 가진 과출소를 에이급, 45점을 득점할 수
있는 관할구역일 가진 과출소를 비급, 40점을 득점
할 수 있는 관할구역일 가진 과출소를 시급으로
별표 3과 같다.

② 채점된 등급이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조정(개척정)
을 요할 때에는 연도말에 1회 일관 시행한다.

제 11 조 (평점기준 승인) 평점자는 평점표에 의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경찰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평점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 12 조 (평점방법) 평점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직원성적은 별표2 파출소 직원성적표에 의하여 경찰서 해당과, 계에서 처리된 결과를 대조 판산 채점하여 개인별 종합성적을 산출 등급별 고득점 순위로 명부를 작성한다.
2. 파출소장의 성적은 직원 총득점의 평균치(부수 득점)의 별표1 파출소장 평점표에 의하여 채점된 점수를 종합 등급별 고득점순위로 작성한다.
3. 승물의 승진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득점의 상한선은 무제한으로 하위 직원은 예이급 50점, 미급 45점, 서급 40점으로, 파출소장은 예이급 65점, 미급 60점, 서급 55점의 하한선을 둔다. 다만 사정에 따라 경찰국장은 하한선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3 조 (평점결과의 보고) 경찰서장은 별표1, 2 평점표와 별표4에 의한 평점 순위자명부를 다음 각호 해당자분으로서 익월 10일 경찰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우수자 : 직원 1위부터 10위까지
2. 불량자 : 책정하한선 미달자
3. 파출소장 : 등급별 고득점순위 인원

제 14 조 (심사) 경찰국장은 선조에 의한 보고분에 대하여 허위 또는 착오유무를 먼저 현지 확인 심사하여야 한다.

제 15 조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전조에 의한 현지
인사실에서 허위사실 또는 부정행위가 발견될 때
에는 특검의 무효와 징계책임이 발생한다.

제 16 조 (기록 및 활용) 경찰서 외근 주관과에서는
매 분기말성적을 인사주관부서에 통보 이를 인사기
록카드에 부기하여 경찰관승진임용규정에 의한 근무
성적평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17 조 (평점결과의 인사반영) 평점결과 우수자 및
불량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조치한다.

1. 우수자 (평점대상별)

가. 월말국전체종합성적 1,2,3 위자 및 각서 1 위
자 (과출소장 제외) 에 대하여는 경찰국장표창
및 부상

나. 분기말국전체종합성적 1,2,3 위자에 금, 은, 동
상을 수여

다. 연도말국전체종합성적 우수직원은 특별승진 임용

2. 불량자 (평점등급별)

가. 월말에 경찰국미 제한한 하한선 해당자는 경
찰서장의 제고장 발부

나. 분기말 2 회이상 하한선 해당자는 경찰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 인사조치

제 18 조 (평점의 공개) ① 외근 주관자가 평점한 결과
는 미평점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㉔경쟁적인 능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자와 불량자의 특점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하달하여야 한다.

제 19 조 (외근주관계장의 평가) 외근주관계장의 근무 평가는 관하 외근경찰관의 성적에 의하여 6개월마다 이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69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실시한 경점결과는 이 규정에 의하여 평점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특검점)

파출소장명점표

항 목	세 부 사 항	채 점 기 준	비 고
(특검항목) 부수특점		직원의 특점평균을 기본특점으로 함.	
환경정리	감독자의 재량	우 5점, 양 3점, 가 2점	감독순시시월간 전반을통하여
교육훈련	소집교양 직장훈련포함	1인당 0.5점	
청소년지도	취업알선	취업 1명당 1점 (5점한)	
선행실담	대의보도시 (신문, 라디오등)	1건당 3점	
시범파출소 운영	포 장	서 장 2점 국 장 5점	
상 혼	개인포창	서장 1점, 시장 (국장) 3점 장관 (치안국장) 5점 총리대통령 10점	

		홍보상 15 집, 대외 3 점	
	파출소 단체 표창	개인 표창 특점의 1/2	
속리꾼 운영	통제파악 및 일만 상황	우 3 점 양 2 점 가 1 점	
	교육훈련 상황	우 5 점 양 3 점 가 2 점	
	무기관리 사항 (공약지피비만 해당)	우 5 점 양 3 점 가 2 점	운영 불방으로서 감점시는 '양' 에 준할 것.
(감점 항목)	복장 위반 지시명 명 위반	매 회 당 1 점	
근태 및 복무규율	무단조퇴 지참	매 회 당 1 점	
	무단결근	" " 2 점	
	근태질락	" " 5 점	
	환경정리 불량	" " 2 점	
	시범파출소 운영 불량	월 간 5 점	
	업무파악 불량	매 회 당 3 점	
	근무지와의 대리 작성	" " 3 점	

항 목	세 무 사 항	채 점 기 준	비 고	
	근무제 퇴직작성불량	매회당 2점		
소장업무	조퇴및교양불량	" 1점		
	감독확인동불량	" 3점		
	보고지연 전락	" 3점		
장비관리	통신기기등 장비 관리분량	매건당 2점		
자체사고	직원사고포함	매건당 10점		
징 계	경고(제고장포함)	매 회 5점		
	견 책	" 10점		
	감 봉	1 월	15점	
		3 월	20점	
6 월		30점		

별표 2 (특정사항)		과출소직원봉급표	
항 목	세 부 사 항	채 점 기 준	비 고
보안사법 단속	단속전수 (노점잡상포함)	수심회부로서 5건미만 3점 10건까지 5점 5건초과당 1점	
	미아가출인등	처리전수 3명당 1점	본국에보고되어 수배된분에만함
보호및수배	결인부탕가 단속	단속수봉소치 5명당 1점 (10집합)	공공기관애수용 조치된분
	순독물유출물처리	처리전수 1점당 0.5점	취급조치트분석 보고된분과분석 신달하명분
영입감사	근로전당근단속	수심회부로서 1점당 1점	
보행자단속	상인사포함	수심회부로서	

항 목	세 부 사 항	채 점 기 준	비 고
		5건미만 2점 · 10건까지 4점 5건초과당 1점	
불심검문	인지수사검거	강력범구속 1명당 10점 도범 " " 5점	
학 사 범	강력범	구속 1명당 7점	
	도 범	구속 1명당 3점 불구속 1명당 1점	
	치기배	구속 1명당 5점 불구속 1명당 1점	
	폭력사범	구속 1명당 3점 불구속 1명당 1.5점	
	기타형사범	구속 1명당 3점 불구속 1명당 1점	
반공법및국	간첩 무장공비	구속 1명당 50점	
가보안법범	기타사범	구속 1명당 10점 불구속 1명당 5점	
우범자관찰	개인별담당	대상 5명당 1점	
	(갑·을·병공허)	재범 발견및행불자발견조치시 1명 3점	
요시인시찰	"	대상 3명당 1점	
	"	재범 발견및행불자발견조치시 1명 3점	

안전사고 처리	현장조사처리	1건당 1점	폭발물사고, 화재 익사, 동사, 행여 사망자, 음독자 등 으로서 본서보고 필분
첨보수집		상보1건당 1점 봉보하달3건당1점 (20점한)	
도난현장 입검	강력범, 도범 검 거사 2중독집	1회당 1점	
소재수사시	남달라범분으로서	5건처리당 1점	
선원조사		3건처리당 1점	
선예미남	대외보도원분	1건당 5점	
청소년선도	보도관찰	5명당 1점 (5점한)	계속보도관찰분
	호적찾아내기	1명당 1점	
J.O. 4비	비밀자관문기 28	5회까지 2점 6~10회 3점	목적지도착키시 간우출발시라도 계속배치시는1 회도 각주
	누집	10회이상 5점	

항 목	세 부 사 항	채 점 기 준	비 고
기타경비	비번자근무시 2중 특점	매 회 1 점	행사경비, 메모 진압등
비번근무	근무지 정시 (서장)	8 시간이상 1 회 1 점 8 시간이하 1 회 0.5 점 (5 점한)	비번자로서방법 단속차출근무등
호구조사	담당세대수	1 - 100 세대 5 점 101 - 200 세대 6 점 201 - 300 세대 7 점 301 - 500 세대 8 점 501 이상 10 점	
예비군운영	과출소단위 담당 인원	500 명이 하직원공통 (소장제외) 2 점 501 - 1,000명 " " 4 점 1,001 - 2,000명 " " 6 점 2,001 이상 " " 8 점	
타격대	서장의근무지 정시	근무 1 일당 1 점	

교우훈련	소장교양 직장훈련등	1 회당 0.5 점	
상 훈	개인 표창	서장 1 점, 서장 (국장) 3 점 장관 (치안국장) 5 점, 중리, 대동령 10 점, 훈포장 15 점, 대외 3 점	
	파출소 난채 표창	개인 표창 득점의 1/2	
외근 주관자 재량점수	평시의근부성적 지시 명령이행등 삼각우수자 불 양자의 조정	파출소근무인원의 20% 안도내 5 점 " 50% " 3 점 " 30% " 1 점	
서장재량점 수		파출소근무인원의 20% 안도내 10 점 " 50% " 8 점 " 30% " 5 점	

(감점사항)

항 목	세 부 사 항	재 료 기 준	비 고
사채경비	무기관리	손실불량, 훼손	2점
	총기실탄의휴대요령적부	지시위반 매회당	1점
	망 실	1건당	2점
	훼손, 불휴대	"	1점
복무규율 및 근 태	복무위반, 지시명령위반	매 회	1점
	지참, 조퇴	1 회	1점
	조회불참	1~2회 1점 3회이상	3점
	무단결근	매 회	3점
	근무결락	"	2점
	기본근무내단	"	2점
	병행	"	2점
	특수	"	2점
	허위제출	기본전수 미달	2점

	도난임김	결락, 소홀, 태만	2점
	신원조사	기인지연 건당	2점
	소재제공등	'	1점
	우범자 관찰	규정회수미달 1명당	2점
	요시인 관찰	'	3점
	보도관찰	누락, 태만	1점
	서류정리	개 회	2점
	(보고서 연의 랑혼철등)		
정 계	경고 (제고장포함)	개 회	5점
	전 채	'	10점
	강 봉	1월 15점, 3월 20점, 6월 30점	

별표3 의근성적평가에 따른 시·파출소별 급별현황

시		급별	A 급	B 급	C 급
중 부	17	형동, 울 2, 울 3 울 4, 총 2	영 회, 총 4, 총 5, 청 6, 울 6, 장충, 남산, 무정, 필동, 주자, 퇴 6	공 원	
중 로	21	광화분, 총 1 총 2, 총 3, 관수, 대묘	세공, 와룡, 신문, 청진, 송현, 가회, 사직, 소적, 효자, 세동, 천굴, 내자, 흑인, 흥의, 규정		
남대문	15	역전, 남대문	회현, 양동, 소공, 동자, 남 3, 도동, 후동, 후북, 후서, 남산		
서대문	18	영천, 만리, 서대 문, 홍계, 연회	대현, 안산, 신촌, 서소문, 의주로, 만 리 2, 독립문, 중정, 교동	세검, 현거 교남, 북아현	
동대문	18	총 5, 신설, 등묘, 총 6	효계, 혜화, 보문, 고사, 신용두, 창신, 총 4 용두, 창청, 용남, 명륜, 낙산, 덕산, 원남		
용 산	19	역전, 이태원 원 2, 삼각지	갈월, 남영, 청과, 동부, 한남, 북한강, 용산 원 4, 보관, 원 1, 용기, 서빙고, 효창, 도원		

		북한남		
성 북	18	결남, 필곡, 송인	중암, 북선, 돈암, 서선, 정능, 성암, 인영, 남중, 동선, 정수, 안동	안서, 정동, 삼선, 성북
청양리	20	덕선, 청양리, 남용두	성능, 휘경, 홍능, 중량, 재기, 이문, 장안, 답십, 기학, 신양, 수문, 정춘, 천곡, 망우	중화, 면목, 공능
마 포	18	노고산, 서아현, 남광덕	남아현, 엄리, 남업리, 광덕, 동아현, 동교, 아현, 도화, 마포, 현석, 신공덕, 서강, 서교, 대종, 신고	
영동포	16	덕선, 영동포, 송암	분래, 봉암, 남강, 오봉, 여의도, 오유, 양필, 구로, 망산	도림, 고척, 신곡, 양동
성 동	22	죽원, 용곡, 영미	아직, 양왕, 남호, 성구, 금수, 금남, 마장, 중원, 무라, 약수, 옥수, 유락, 행용, 사근	금북, 윤봉, 금곡
노양진	19	대방, 남간강, 명수대, 노양진	상노, 관익, 상성, 동작, 신길, 배운, 봉천, 대립, 신림, 배신	신광가산신, 동남성근단
동 부	12	천호	정수 1, 정수 2, 하일	광장, 신양, 구천, 송파

시	과	과	과	과
				언주, 대왕, 하일, 거덕.
서 부	11	가 과	대조, 응암, 풍남, 은평, 불광, 홍은, 수색	갈현, 역촌, 북가과
북 부	9		수유, 상계, 잠위, 잠계, 우이, 도봉, 산양, 북산	노해
계	253		167	34

별지 4 평점순위자명부

가. 개인별성적우수자

순위	소속	계급	성명	평점	특점	감점	비고

나. 개인별성적불량자

급별	소속	계급	성명	병점	특점	감점	비고

다. 과속소장성적보

순위	급별	소속	계급	성명	평점	근부인점	직원총점	부수특점	소장특점	소장감점

사 명

◎ 1969년 10월 20일

남부자동차운수사업소 지방기계지원 윤 영 수
지방공무원법 제 63 조 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직을 명함

◎ 1969년 10월 22일

구획정리과 지방토목지원보 김 영 수
지방공무원법 제 63 조 1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직을 명함

◎ 1969년 10월 31일

공무원지원 행정사무관 한 상 오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1969년 11월 1일

상무과 제경서기관 안 모 기
행정서기관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산업국상무과장에 보함

기전과 전기기사 김 인 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으로 전출을
명함

토목과 지방전기기사 김 수 은
전기기사에 임함

포목과조명시설계장직무대리를 명함

성북구수도사업소 행정서기보 안 대 식

철도청대건철도국건축을 명함

신 재 일

서울특별시전입을 명함

지방건축기원에 입함

7호봉을 급함

용산구근무를 명함

김 병 권

서울특별시전입을 명함

지방지적기원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영등포구근무를 명함

이 영 관

서울특별시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에 입함

6호봉을 급함

서무과근무를 명함

김 용

조건부지방행정주사보에 입함

청소계1과근무를 명함

김 의 벽

조건부지방사서서기보에 입함

영등포구근무를 명함

안영희

조건부지방사세서기보에 입함

동대문구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건축지원보 입상규

운동장근무를 명함

지방제경주사 최학윤

지방행정주사에 입함

1호봉을 급함

근속가봉월 1,560원을 급함

성동구근무를 명함

지방사세주사 강대원

지방행정주사에 입함

1호봉을 급함

근속가봉월 2,080원을 급함

영등포구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서기보 심홍창

지방건축지원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근속가봉월 110원을 급함

성동구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주사보 김주환

특도수원지사무소

지방토목기사보 이소녕

토목시험소 지방토목기사 이 재 명	
한강건설사업소근무를 명함	유 네 형
조건부지방재정서기보에 임함	
중구수도사업소근무를 명함	소 남 천
지방임입기사보에 임함	
6호봉을 급함	
녹지과근무를 명함	
기전과 선기기과	김 인 수
지방선기기과에 임함	
1호봉을 급함	
근속가봉월 850 원을 급함	
수도국기전과장적무대리를 명함	
시립교락악단 차석연주사	박 국 수
원에 비하여 그 직을 명함	
	박 남 천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7호봉을 급함	
동대문구근무를 명함	
◎ 1969년 11월 5일	
	정 수 상
조건부지방약무지원보에 임함	

0769

마포구보건소근무를	명합			
	인사과	지방간호기사	임	순애
마포구보건소근무를	명합			
	중부병원	지방간호기원	김	성희
인사과근무를	명합			
				이동근
조건부지방행정주사에	입합			
운수제1과근무를	명합			
	마포구보건소	지방행정주사	정	원섭
기획과근무를	명합			
	기획과	지방행정주사	박	성우
마포구보건소근무를	명합			
	운수사업과	조건부지방기계사보	조	윤연
원에 의하여 그 직할	명합			
	중기관리사업소	지방기계기원보	강	인희
지방공무원법제63조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직할	명합			
	유산구	지방행정주사	이	계울
공무원교육원과전근무를	해제하고			
청소제1과근무를	명합			
	세정과	지방재경주사	김	송구
공무원교육원과전근무를	해제하고			
아파트건설사업소근무를	명합			
	건축과	지방건축기사보	이	종환

공무원 교육원 과전근무를 해제하고

증로구근무를 명함

증로구 지방행정서기보 이 진 덕

공무원 교육원 과전근무를 해제하고

서대문구근무를 명함

증로구 지방사서서기보 함 동 운

공무원 교육원 과전근무를 해제하고

영등포구근무를 명함

증 구 지방행정서기 국 정 인

공무원 교육원 과전근무를 해제하고

용산구근무를 명함

증 구 지방행정서기보 김 누 식

공무원 교육원 과전근무를 해제하고

증로구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 차 경 현

공무원 교육원 과전근무를 해제하고

심복구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사서서기 유 지 습

공무원 교육원 과전근무를 해제하고

성동구근무를 명함

성동구 김입지원오 김 총 태

공무원 교육원 과전근무를 해제하고

영등포구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서기 김 구 벽

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성북구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전기기사보 김 철 학

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운동장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사서서기보 최 광 덕

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동대문구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서기 황 우 용

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영등포구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서기보 김 례 흥

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마포구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적기원 김 동 찬

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송구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행정서기보 강 상 만

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서대문구근무를 명함

용산구 지방행정주사보 정 완 응

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영등포구근무를 명함

중동구수도사업소 지방토목기사보	최 상 문
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동부토지구획정리사업소근무를	명함
성동구수도사업소 지방토목기사보	최 문 훈
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서대문구수도사업소근무를	명함
성북구수도사업소 지방재경사기보	송 인 택
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용산구수도사업소근무를	명함
용산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성 계 훈
영등포구수도사업소 지방토목기사	성 단 보
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종로구수도사업소근무를	명함
중동구보건소 지방보건기사	유 낙 현
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	어제하고
서대문구보건소근무를	명함
중대문구보건소 지방행정서기	조 건 닐
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선북구수도사업소근무를	명함
성동구보건소 지방보건기사	이 근 태
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마포구보건소근무를	명함
서대문구보건소 지방행정서기보	노 순 영

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서대문구수도사업소근무를 명함

마포구보건소 지방보건기원보 박 동 준

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용산구보건소근무를 명함

용산구보건소 지방보건기사보 박 문 규

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영등포구보건소근무를 병합

용산구 지방행정주사 권 영 기

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연료과파견근무를 병합

마포구보건소 지방약무기원 정 병 호

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송파구보건소파견근무를 명함

용산구보건소 지방행정주사 유 영 진

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보건과파견근무를 병합

마포구수도사업소지방행정서기 김 덕 성

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주택행정과파견근무를 병합

서대문구 지방행정서기 이 학 모

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중구파견근무를 병합

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	여	규	삼
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동대문구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서기보	전	재	석
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성북구 파견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건축지원보	김	연	구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	김	진	섭
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용산구 파견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	한	광	구
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서대문구 파견근무를	명함		
서대문구수도사업소 지방토목기원	김	은	길
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영등포구수도사업소 파견근무를	명함		
영등포구보건소 지방보건기사보	박	은	섭
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성동구보건소 파견근무를	명함		
녹지과 지방인입기사	최	남	진
농계과 지방행정서기	이	동	수
서대문구 지방행정주사	신	철	호
마포구 임업기원	손	근	토
영등포구수도사업소 지방계경서기	최	선	웅

0763

노랑진수원사무소	지방전기기사	김 교 복
북도수원사무소	지방토목기사	유 정 호
성북구보결소	지방약무기원보	신 완 규
보건과	지방행정주사보	이 석 중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보	박 용 낙
공무원교육원 다견근무를 해제함		김 양 경
조건부토목기사보에 입학 한강건설사업소근무를 병함		
공무원교육원 행정서기관 복직을 명함		홍 윤 계
공무원교육원 교수부근무를 병함 조건부지방재경서기보		이 부 식
지방재경서기보에 입학 7호봉을 납함		
중부병원근무를 병함 ◎1969년 11월 8일		
아동병원	지방약무기사	김 영 식
마포병원약제과장직무대리를 병함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	김 등 우
복직을 명함 용산구근무를 병함		

◎ 1969년 11월 10일

보성군 지방농업기원 박 영 수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농업기원에 임함

7호봉을 급함

동대문구근무를 명함

김 중 실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용산구수도사업소근무를 명함

용산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박 재 도

예산과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행정주사보 김 기 향

사회과근무를 명함

사회과 지방행정주사 김 근 수

남대문근로자합숙소근무를 명함

남대문근로자합숙소 지방행정주사 이 은 순

토목시업소근무를 명함

삼성지업보도원 지방행정주사 한 규 익

방역사무소근무를 명함

방역사무소 지방행정주사 김 퇴 성

성북구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주사	심	근
삼성 직업보도원근무를 명함			
보건과	지방행정주사	박	기 우
용산구보건소근무를 명함			
종로구보건소	지방행정서기보	백	용 기
동대문구보건소근무를 명함			
보건과	지방보건의사	안	상 경
용산구보건소근무를 명함			
용산구보건소	지방보건의사	박	영 식
성동구보건소	지방행정주사보	김	정 현
종로구보건소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행정주사보	백	은 수
남대문구로자법속소	지방행정서기	박	영 순
서대문구보건소근무를 명함			
		이	익 생
조전부지방수역원보에 임자			
성동구근무를 명함			
수도국거전과	지방전기과	김	인 주
지방전기거정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수도국거전과장에 보함			
◎1969년 11월 11일			
종로구	지방행정주사	조	정 배

69.12.31 까지 운수계 2 과

과전근무를 명함

◎ 1969년 11월 12일

건축과 지방행정서기 이 학 수

복지물 명함

건축과근무를 명함

성동구수도사업소 지방토목기사보 김 만 용

양로원 지방행정주사보 윤 기 철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1969년 11월 15일

지방보건기생 김 세 인

7호봉을 급함

중부병원근무를 명함

지방토목기원보 나 권 규

7호봉을 급함

남부토지구획정리사업소근무를 명함

지방토목기원보 박 연 석

7호봉을 급함

계관사업소근무를 명함

지방토목기원보 김 채 훈

7호봉을 급함

수도관리사업소근무를 명함

지방강호기원보 신 소 자

7호봉을 급함	지방간호지원보	유영선
중부병원근무를 명함		
7호봉을 급함	지방간호지원보	위학천
동부병원근무를 명함		
7호봉을 급함	지방간호지원보	박부석
남부병원근무를 명함	지방간호지원보	하명자
7호봉을 급함	지방간호지원보	이승자
정신병원근무를 명함		
7호봉을 급함	지방간호지원보	김성희
서대문병원근무를 명함		
7호봉을 급함	지방간호지원보	신명숙
아동병원근무를 명함	지방간호지원보	홍남여
7호봉을 급함	지방간호지원보	나숙일
	지방간호지원보	장윤원

중구보건소근무를 명함	지방간호지원보	강	봉	주
7호봉을 급함				
용산구보건소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	강	우
용산구수도사업소근무를 명함		행정서기보	이	우
행정서기보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양정과근무를 명함			권	연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농업지원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근속가공 월330원을 급함				
성동구근무를 명함			이	낙
지방보건지원보에 임함				
7호봉을 급함				
송로구보건소근무를 명함				
가속위생시험소	지방수위사	최	영	찬
가속위생시험소	지방수위사	김	경	삼
농정과근무를 명함				

	가축위생시험소	지방수의사보	권 순 호
	"	"	이 세 용
	"	지방수의원	김 명 호
	"	"	라 정 태
	용산구	지방수의원보	김 금 곤
	성동구	"	이 규 준
농정과근무를	명함		
	가축위생시험소	지방수의사보	안 경 환
	영등포구	지방수의원보	김 기 근
성동구근무를	명함		
	가축위생시험소	지방수의원	정 종 환
동대문구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수의원보	이 규 본
용산구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수의사보	조 승 립
영등포구근무를	명함		
	농진과	지방수의사	이 하 준
	"	지방수의사보	전 영 훈
	"	"	김 세 동
	"	지방수의원	유 갑 용
	"	"	홍 순 오
	"	지방수의원보	김 비 의
가축위생시험소근무를	명함		

	일	병	규
조건부지방사세서기보에	입	합	
동대문구근무를	명	합	
영등포구보건소	지방보건기사보	박	문 규
청소계 1과	조건부지방행정주사보	김	용
구외수원지사무소	지방토목기사	김	정 욱
원에 의하여	그	직	을
	조	건	부
	지	방	행
	정	주	사
	보	에	입
	합		
6호봉급	급	합	
용산구근무를	명	합	
© 1969년 11월 17일			
행정과	지방행정주사	장	길
검무과	지방행정주사보	박	종
농부과근무를	명	합	
아농보호소		박	석
행정과근무를	명	합	
시민과	지방행정주사	이	성
서부과근무를	명	합	
서부과		박	종
구피정리과근무를	명	합	
총무과		김	용
연료과		이	동
		길	

	사회과	지방행정주사	이 만 우
운수제 2 과근무를 명함	서대문구보건소	"	손 동 수
연료과근무를 명함	운수제 2 과	"	신 상 욱
사회과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	이 덕 원
의약과근무를 명함	남부자동차운수	"	홍 현 국
	창로구	"	임 진 심
업무과근무를 명함	관지과	"	박 중 진
서대문구근무를 명함	문류장	"	이 검 호
영등포구근무를 명함	기체과	지방행정주사보	김 풍 만
감사과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	김 영 득
의약과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	이 상 길
남부자동차운수근무를 명함	통계과	"	노 재 유
서대문구보건소근무를 명함			

성북구보건소방역과장	지방비두기과	박인섭
성동구보건소근무팀	명함	
천호지소장에	보함	
성동구보건소천호지소장		기우선
성북구보건소근무팀	명함	
방역과장에	보함	
성북구	지방행정주사보	김영규
행정과근무팀	명함	
종로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정찬원
시민과근무팀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주사	김유영
성동구보건소근무팀	명함	
용산구	지방행정서기	이찬원
종로구수도사업소근무팀	명함	
성동구보건소	지방의무기과	기우선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채에	처함
성동구수도사업소	지방계경서기보	함종구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2.3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면에	처함
성북구	지방행정주사보	정기화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 월에	처함

성동구보건소 지방행정주사 차 창 배
 지방공무원법제 69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이 처함
 성동구근무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주사보 김 종 만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이 처함
 성동구근무물 명함

성북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조 계 호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견책이 처함
 동대문구근무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서기보	김 정 석
삼북구	지방재경서기보	송 성 우
토목과	지방토목기원보	이 중 하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보	윤 용 구
영등포구	지방사세서기보	함 동 윤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	황 우 응
삼북구	지방토목기원	조 정 규

노량진수도사업소 지방토목기사보 신 덕 현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이 처함

중구 지적기원 김 동 찬

국가공무원법제 78 조 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용산구 지방행정주사보 정진영

행정주사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근속가봉월 400 원봉 급함

용산구근무를 명함

용산구 행정주사보 정진영

교동부전출을 명함

© 1969년 11월 20일

행정이사관 김한상

서울특별시보건사회국장에 포함

김원하

서울특별시산업국장에 포함

행정부이사관 장지훈

서울특별시관상운수국장에 포함

이희출

서울특별시청소국장에 포함

삼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에 포함

서기석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에 포함

기전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 포함	행정부이사관	이 상 덕
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에 포함	"	이 우 영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 포함	"	홍 석 철
국가공무원법 제 73 조의 2 제 1 항 제 2 호 및 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해제함		김 건 우
조건부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종로구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	김 진 설
	성동구 지방사세주사보	오 동 환
용산구근무를 명함	영등포구보건소 지방보건기사보	박 선 설
성동구보건소근무를 명함	양정과	계경주사 이 범 계
복직을 명함		
동계과근무를 명함	경리과	지방계경주사 이 범 익
복직을 명함		
아파트건설사업소근무를 명함		

정리과	지방계경주사	이	종	영
복지실 명함				
통제과근무를 명함				
	지방계경주사보	한	성	기
복지실 명함				
양정과근무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교수부	행정서기관	한	연
국				
물농경제과장에 포함				
	청소제1과 청소제1과장		김	두
민				
행정과장에 포함				
	보건과 보건과장	보건기정	김	창
순				
보건제1과장에 포함				
	냉정과 냉정과장	행정서기관	윤	낙
한				
보건제2과장에 포함				
	관리과 관리과장		안	찬
희				
관리제1과장에 포함				
	기획과 기획과장직무대리	행정사무관	이	은
새				
관리제2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중 구 중무과장		국	응
호				
기획과장직무대리를 명함				
	총무과 시장실	지방행정사무관	박	수
복				
청소제1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감사과 감사제3계장		문	부
봉				

시장실근무를 명함

주택맹정과 태택맹정과장 행정서기관 이 인 재

건축계 1 과장에 포함

건축과 건축과장 건축기정 황 숙 계

건축계 2 과장에 포함

조건부지방행정주사로 남 해 군

지방행정주사보에 입함

6호봉을 급함

관제과근무를 명함

조건부지방행정서기 배 창 일

지방행정서기에 입함

7호봉을 급함

예산과근무를 명함

김 종 협

지방행정서기에 입함

7호봉을 급함

보건과근무를 명함

한강건설사업소 지방토목기과 심 형 윤

감사원전출을 명함

◎1969년 11월 24일

지방토목기원 염 형 국

지방토목기사보에 추서함

◎1969년 11월 25일

상 형 식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영등포구수도사업소근무를 명함

김 준 영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조건부지방행정서기보에 입함
서대문구근무를 명함

이 덕 권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운수제1과근무를 명함

보건과 보건제장 시장경찰사누단

이 준 운

보건행정제장에 입함

공매방지제장

장 영 민

환경위생제장에 입함

방역제장

지방보건기과

유 덕 열

방역제장에 입함

지도제장직무대리

지방보건기사

연 상 덕

보건지도제장직무대리를 명함

위생제장

지방행정사누단

이 유 성

식품위생 제장에 임함			
관리과 건설행정계장	지방행정사무관	정 호 건	
건설행정 제장에 임함			
중기관리계장		이 상 식	
중기관리 제장에 임함			
시설관리계장		강 대 언	
시설관리 제장에 임함			
공지관리계장		신 태 식	
공지관리 제장에 임함			
주택행정과 주택관리계장		안 종 윤	
건축행정 제장에 임함			
주택개발계장		최 종 필	
건축개발 제장에 임함			
건축과 건축계 제장	지방건축기과	유 태 현	
건축계 1 제장에 임함			
건축계 2 제장		김 대 로	
건축계 2 제장에 임함			
상무과 물가관리계장		남 상 수	
도매시장 제장에 임함			
방호과 제 1 계장	조건부지방행정사무관	이 경 배	
심사분석 제장에 임함			
관리과 보상계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병 식	
감사계 3 제장에 임함			

중구 청소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유 동 철
방호제1계장에 임함		
세정과 세정계장	·	김 제 량
행정계장에 임함		
행정과 행정계장	·	이 흥 순
예산제1계장직무대리를 명함		
청소제1과 서무계장	·	김 조 권
세정계장에 임함		
아동병원 서무과장	·	심 상 정
서무계장에 임함		
공무원교육원 교수부	·	윤 제 형
장비계장에 임함		
중구 사회과장	·	최 기 환
식품지도계장에 임함		
기획과 심사분석계장	·	조 영 순
보상계장에 임함		
청소제1과 장비계장직무대리	지방행정주사	박 승 만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유료도로계장에 임함		
4호봉을 급함		
건축과 건축행정계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수 철
총무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사회과	·	방 준 환
남부지업안전소장에 임함		

		남부직업안정소	소장	정 환 국
운영계장직무대리물	명합	새정과	지적기사보	김 동 식
서대문구군무원	명합			
	주택행정과	지방행정주사		홍 사 성
	아동병원	"		김 태 완
	동부건설사업소	"		정 응 성
	주택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오 중 택
	건축과	"		송 환 상
	관리과	"		이 수 훈
	건축과	지방행정서기		이 수 학
	서대문구	"		신 석 근
	건축과	지방행정서기보		백 윤 기
건축계 1 과근무원	명합			
	건축과	지방행정주사		주 전 홍
	성농구	지방행정주사보		김 성 복
	건축과	지방행정서기보		김 진 호
	"	지방건축기사		허 작
	"	"		도 성 만
	"	"		김 희 역
	"	"		문 충 선
	"	지방건축기사보		권 태 정
	"	"		조 규 찬
	"	"		김 연 창

	건축과	지방건축기사보	이	금	수
			박	용	서
건축계 2 과근무를	명함				
			박	동	희
지방공무원법제 65 조제 1 항3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직위를	해제함				
	건축과	지방건축기원	이	영	수
			간	송	일
			조	탁	근
건축계 2 과근무를	명함				
	보건과	지방행정주사	수	효	신
보건계 1 과근무를	명함				
	용산구보건소		유	영	진
보건계 1 과과전근무를	명함				
	보건과	지방행정주사보	김	주	진
			이	성	복
		지방보건기사	김	응	낙
			김	형	홍
			이	능	권
			박	삼	현
		지방간호기사	이	금	선
	서대문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김	정	식
보건계 1 과근무를	명함				

	보건과	지방보건기사	최	성	식
	중구보건소	지방보건기사보	이	규	남
	보검과	지방행정주사	이	한	춘
	성암구	"	최	형	목
	보건과	지방행정주사보	배	순	혁
	경리과	"	김	찬	주
	보검과	"	이	석	중
	"	지방행정서기	김	중	협
보건계 2 과근무물 명함					
	관리과	지방행정주사	최	호	민
	"	"	김	시	영
	"	"	윤	치	중
	"	"	김	선	구
	"	"	이	후	직
	"	지방행정주사보	진	양	혁
	"	"	신	용	철
	"	"	박	장	수
	"	지방행정서기	신	창	식
	성북구보건소	"	조	광	형
	관리과	지방재경주사	조	기	균
	"	기계기사보	신	영	철
관리계 1 과근무물 명함					
	관리과	지방행정주사	강	수	웅

관리과	지방행정주사	문현식
주택행정과	"	안재환
관리과	지방행정주사보	최역환
"	"	변경기
"	"	김은준
"	"	김영달
"	"	노은모
"	지방행정서기보	김행근
"	지방토목기사	성낙현
도시계획과	지방토목지원	이송철
관리제 2 과근부를 병합		
동대분구	지방행정주사	김홍수
영등포구	"	황호환
관계과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
상누과	지방행정서기보	선홍기
물동경계과근부를 병합		
중구	지방행정주사	하건철
감사과근부를 병합		
주택행정과	"	오남식
사회과근부를 병합		
사회과	"	임항석
관계과근부를 병합		
보건과	지방행정주사보	김우영

경리과근부를 명함			
주택행정과	지방재경주사	노	중 현
아파트건설사업소근부를 명함			
"	지방행정주사	최	성 기
동부건설사업소근부를 명함			
기획과	지방행정서기	김	정 인
동대문구보검소	"	이	정 근
중구보검소근부를 명함			
중구보검소	지방행정서기보	김	은 태
동대문구보검소근부를 명함			
"	"	윤	갑 영
중구수도사업소근부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	김	진 호
성동구근부를 명함			
마포구	지방행정서기	신	장 균
영등포구근부를 명함			
중구	지방건축기원보	송	한 영
용산구근부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주사보	라	봉 훈
도시계획과근부를 명함			
서구과	"	염	봉 환
시설과근부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	윤	금 선

부녀 보호지도소근무를 병합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보 고 전 규

남역사부소근무를 병합

방역사무소 , 유 상 너

동대문구근무를 병합

영등포구 , 청 간 수

일부과근무를 병합

, , 광 더 순

중 구 지방행정서기보 인 정 관

시민과근무를 병합

◎1969년 11월 26일

송로구수도사업소 조건부지방행정서기보 김 단 기

지방행정서기보에 입합

7호봉을 급합

성북구보건소근무를 병합

◎1969년 11월 27일

조건부지방행정주사보 조 국 관

기획과근무를 병합

, 박 회 승

송로구근무를 병합

, 조 관

중구근무를 병합

, 김 형 덕

동대문구근무를 명함	조건부지방행정주사보	김 위 권
성동구근무를 명함	"	홍 희 영
성북구근무를 명함	"	이 병 무
서대문구근무를 명함	조건부지방토목기사보	박 계 병
한강건설사업소근무를 명함	조건부지방사세서기보	지 광 남
중구근무를 명함	"	이 범 산
영등포구근무를 명함	조건부지방토목기원보	권 문 현
성북구근무를 명함	지방보건기원보	오 창 섭
© 1969년 11월 29일		
7호봉을 급함		
영등포병원근무를 명함	"	김 남 홍
4호봉을 급함		
동부병원근무를 명함	조건부지방간호기원보	정 경 자

중부병원근무를 병합

조건부지방간호지원보 김 귀 순

공무원교육원근무를 병합

박 지 삼

이 속 개

김 정 자

종로구보건소근무를 병합

서 경 의

동대문구보건소근무를 병합

박 찬 순

영등포보건소근무를 병합

김 경 자

송구보건소근무를 병합

농정과 지방수리원보 김 삼 순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병합

조건부지방농업지원보 김 천 구

지방농업지원보에 입함

7호봉을 급함

양정과근무를 병합

©1969년 11월 30일

서대문병원 지방간호기사보 최 동 숙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병합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 제 82 호

도시 계획 소로 변경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지내 도시 계획 소로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함.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 계획국도시 계획과 및 관할 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통람에 공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	인장	기 점	종 점	경과지	비고
변경 변경 후	소로	2	14	8	1,116	이문동 292-4	이문동 341-10		
	소로	2	14	8	1,108	"	"		

1969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고시 제 83 호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지내가로

일부변경및 실시 계획인가

서울특별시 용산구서봉고동 지내 도시 계획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 집행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지구 내 일부 가로 변경하여 동 사업실시 계획인가하였기

고시 함.

1. 가로변경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 장	비 고
소토	2	1	8	722	414미터로 축소
"	2	4	8	722	신 길
"	2	5	8	722	"
"	2	6	8	722	"
"	2	7	8	722	"
"	2	8	8	712	"
"	2	12	8	215	"
"	2	9	8	215	"
"	2	10	8	215	"
"	2	11	3	215	"
"	2	13	8	210	"
"	3	5	6	258	폭 지

2. 사업자 지정조서

가. 사업의 종류: 일단의 주택지정영역 관할 시설

나. 사업집행자: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사장 관공모

다. 사업집행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간장터 일

지구 (100.255번)

라. 사업의 착수와 준공예정일

착 공: 1969. 10. .

문 공 : 1970. 12. 3.

1969년 11월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고시 제 84 호

서울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집행자를 다음과 같이 폐지 및 지정하였기 고시 함.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에 비치하여 관계인의 총람에 공함.

1. 사업집행지

서울특별시성북구방문동산 265 의 1 의 14 필지
(22,529 평)

2. 사업명 : 일단의 주택지 경영에 관한 시설

3. 사업기간 : 1968.3.5 ~ 1970.12.31.

4. 사업집행자

가. 폐지 (중전사업집행자)

서울특별시종로구동숭동 1-1 경영자

나. 지정 (거경)

서울특별시종로구제동 84-45 박 지 수

1969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장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243 호

1. 1964.7.3 서울특별시공고제 360호로 환지 처분한 대원도지구획정리지구중 아현동 291-10에 대하여 별첨 조서 및 도면과 같이 일부 환지를 변경함.

별첨조서 및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서무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송부함.

1969. 11. 5.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공고제 246 호

수유토지구획정리지구 청산금액 결정통지서를 69.10.21 일자로 각각 송달(구송)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의 불명의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도시계획법 제 16 조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1969. 11. 8.

서울특별시장

동명지번	과도평	감도평	교청부 청산금	징청수 청산금	주 소	성 명
미아동 139-31	2.00			37,224	장위동 168-444	김壽吉
" 121-15		2.70	5,193		미아동 245	백남석
" 136-25		10.30		231,296	" 1119-39	金永濬
" 317-4		1.30	3,983		" 165	주용복
" 328-3		1.60	2,432		" 298	박춘원

동명지번	과도병	감도병	교청부 청산금	수 청산금	주소	성명
미아동 132-30	2.20			51,158	신일동 124-21	金順德
" 316-4		1.10	22,194		명일동 1가 36-40	李吉柱
" 329-17		1.00	19,851		송암동 산 2	朴永誥
" 313-65	3.40			59,931	미아동 703	한중석
" 319-18	1.70			38,299	" 257	조우균
" 209-1		0.40	15,052		" 784	정광복
" 314-17	1.10			19,823	용구동 73	황순택
" 325-15	1.20			25,023	미아동 719-16	황구연
" 311-4		1.40	23,716		" 278-6	심복수
" 139-30	2.00			35,468	용산동 2가 8	한규원
" 308-21	1.40			23,952	미아동 761	박용제
" 198-13		1.35	38,870		" 111	송승림
" 301-18	1.42			23,461	보문동 3가 1-3	진승식
" 302-18		1.00	15,069		수유동 산 131-43	김동호
" 313-34	2.12			38,876	신일동 321	김정자
" 137-18	9.90			251,925	송암동 12-34	김두
" 303-41		1.00	18,892		의정부동 49	李順姬
" 211-15	0.10			1,950	미아동 211-5	주영익

◎서울특별시공고제 248 호

세 목 공 고

1. 건설부고시제 2493 호 (66.6.21) 로 고시된 당시 도시계획사업인 홍제동
지내 도로공사 구역내에 저촉편입되는 토지 및 지상물을 수용코자 도시계획
법제 12 조 및 토지수용법제 20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함.

가. 공 사 명 : 홍제동 지내 도로공사

나. 재산의 표시 : 별지 재산의 내역과 같음

1969. 11. 10.

서울특별시강

토 지 조 서

No	분 할 전 표 시					분 할 후 표 시					관 계 인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주 소	성 명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주 소	성 명	
1	홍제동 294-4	대	106	홍제동 298	원덕현	홍제동 294-4	대	59	홍제동 298	원덕현	인천시 재산관리 332-1 동성합 소공물신 55-Γ 표성물신 Go.
2	"	"	107	"	김윤석	"	"	21	"	김윤석	
3	264-8 " 264-7	"	20	"	원진만	"	"	8	"	원진만	

No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관계인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주소	성명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주소	성명	
4	홍계동 295-22	대	180	정동 ²⁴ 298	주정옥	홍계동 295-22	대	43	정동 ²⁴ 298	주정옥	한일은행
5	" 295-20	"	210	홍계동 298	원덕현	" 295-20	"	42	홍계동 298	원덕현	순흥농산 Co.
6	" 295-21	"	101	" 298	원일기업 Co	" 295-21	"	3	" 298	원일기업	김지탁 남
7	" 294-26	"	11	" 294-26	백용주	" 294-25	"	9	" 294-26	백용주	
8	" 294-27	"	25	" 298	원덕현	" 294-27	"	7	" 298	원덕현	
9	" 294-4	"	100	"	"	" 294-4	"	59	"	"	인천계산동 공성합판 Co
10	" 295-26	"	193	"	"	" 295-26	"	193	"	"	
11	" 298-8	"	22	"	"	" 298-8	"	22	"	"	
12	" 294-31	"				" 294-5	"	55	홍남동 102-1	김장남	홍계동 294 최철호 신남동 333 김귀달
13	"	"				" 294-29	"	11	홍계동 294-29	이원혁	
14	"	"				" 294-28	"	11	" 294-28	임병희	
15	"	"				" 294-25	"	5	" 294-25	임병봉	
16	"	"		미농기		" 294-34	"	8.4	" 미	기	

No.	분 할 전 표 시					분 할 후 표 시 (수용)					관 계 인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주소	성 명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주소	성 명	
17	홍계동 294-31	대				홍계동 294-30	대	32	홍계동 " 홍은동 221-6	294-13 광 294-28 임 221-6 백 남규	왕철 회
18	"	"			"	"	8	홍계동	294-21 박 동섭		
19	홍계동 294-23	"			"	"	3	홍계동 294-23	정 명순		
20	"	"			"	"	2	"	이 충구		
21	"	"			"	"	3	"	임 병		
22	"	"			"	"	9	294 220 홍은동	김 광연		
23	"	"			"	"	2	홍계동 294	임 병용		
24	"	"			"	"	6	"	임 병궁		
25	"	"			"	"	4	294 불광동 310-6	김 억만		
26	"	"			"	"	3	홍계동 294-26	백 용주		
27	"	"			"	"	14	"	현 성욱		
28	"	"			"	"	5	294-12 " 294-14	송 인현		

29	홍제동	대		홍제동	대	17	홍제동	임병삼
30	294-23	"		294-15	"	12	"	곽용철
31	"	"		294-13	"	9	홍은동	백남규
32	"	"		294-12	"	5	홍제동	양희송
33	"	"		294-11	"	11	"	한문기
34	"	"		294-10	"	3	홍제동 294-13	곽용철
				294-9	"		" 294-23	임병삼
							홍은동 221-5	백남규
35	"	"		"	"	7	홍제동 294-8	박병준
36	"	"		294-8	"	2	홍제동 294-3	강용길
37	"	"		294-3	"	22	홍제동	원익현
38	"	"		296-8	"	28	298	원익현
				295-25	"			

◎서울특별시 공고제 253 호

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실시공고

망우토지구획정리사업의 변경실시계획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실시하고 있음을 공고함.
변경내용에 대한 관지서류는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있음.

가. 시행지구

당초: 서울특별시 등지문구면목, 중화, 상봉, 신내,
망우동 각 일부

변경: 서울특별시 등지문구면목, 중화, 상봉, 신내,
망우, 묵동 각 일부

나. 시행면적

당초: 3,320,515.07 m² (1,155,700.7 평)

변경: 6,471,773.58 m² (1,957,702.2 평) 중

공남동 269,269 평은 제외

1969. 11. 15.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공고제 254 호

분묘이장공고 (제1차)

Ⅹ-16 이설사업지구나 (경기도광주군대쌍면 지내)

다음표시 분묘에 대하여 매장등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제 16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 조 2 항의 규정에

이하 다음과 같이 긴급 이장할 것을 공고함.

“ 다 음 ”

1. 분묘의 표시 : 아래 분묘지 표시참조
2. 이장기간 : 1970. 1. 17. 까지
3. 관리인 신고기간 : 69.11.30. 까지
4. 관리인 신고 : 분묘관리자는 위 신고기간내 당시 관
강건설사업소 (관리과) 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신고가 없는 분묘에
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 당시에서 이
장처리할 것임.
5. 기 타 : 상세한 것은 당시 관강건설사업소 (관
리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69. 11. 17.

서울특별시 상 김 현 속

분 묘 지 의 표 시

소재지	지 년	지 목	분 묘 수	소재지	지 년	지 목	분 묘 수
신촌리	75	진	1묘2기	신촌리	산 6	임	1묘3기
"	산 6	임	1묘2기	"	"	"	1묘2기
"	"	"	1묘1기	오야리	1	"	2묘4기
오야리	1	"	1기	"	1	"	1묘1기
"	1	"	1기	"	1	"	2기
"	1	"	1기	"	1	"	1기

소재지	지 번	지목	분 묘 수	소재지	지 번	지목	분 묘 수
오야리	1	임	17	오야리	1	임	1기
"	1	"	87	"	1	"	9기
"	1	"	17	"	1	"	13기
"	1	"	27	"	1	"	13기
"	1	"	27	"	1	"	1기
"	1	"	77	"	1	"	9기
"	1	"	67	"	1	"	6기
"	1	"	77	"	1	"	2기
"	1	"	117	"	1	"	5기
"	1	"	17	"	1	"	4기
"	1	"	47	"	2	"	20기
"	산 20	"	27	"	21	"	1기
"	산 22	"	57	"	21	"	1기
심곡리	296-1	전	2기	심곡리	296-1	전	1기
"	296-1	"	17	"	산 4	임	1기
"	산 4	"	17	"	316	전	1기
"	산 5	임	207	오야리	산 22	임	1기
오야리	산 22	"	27	"	58	잡	2기
"	58	잡	2기	"	58	"	1기
"	22	임	4기	심곡리	6	임	1기
심곡리	6	"	2기	"	6	"	1기

소재지	지번	지목	분묘수	소재지	지번	지목	분묘수
삼곡리	7	임	5기	삼곡리	산 6	임	11기
"	산 6	"	2기	"	1-7	천	9기
"	298-1	천	1묘 2기	"	305-2	"	1묘 2기
"	산 1	임	10묘 13기	"	산 2	임	30묘 30기
"	산 3	"	4묘 6기	"	산 4	"	3묘 4기
"	4	"	1묘 1기	"	산 4	"	1묘 1기
"	4	"	7묘 9기	"	산 4	"	2묘 2기
둔전리	140	"	1기	둔전리	168-12	천	1기
"	149-3	"	20묘 30기	"	1-8-3	임	10묘 20기
"	150-2	매	5기	"	52	"	2기
"	52	임	3기				
			396기				

◎서울특별시공고제 255 호

1. 건설부고시제 2948 호 (66.12.17) 로 고시된
 삼양동-미아리간 도로신설공사 구역내에 저속전압원
 토지를 수용코자 도시계획법제 12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함.

가. 공 사 명: 삼양동-미아리간 도로공사

나. 토지외세복: 별지와 같음

1969. 11. 18.

서울특별시청

도 지 분 말 조 서

소재지	분 할 전			분 할 후			주 소	성 명
	지 번	지 목	지 적	지 번	지 목	지 적		
성북구 미아동	산 112~1	임	4.320	산 112~7	임	31	미 등 기	
"	" 112~4	"	1.080	" 112~6	"	54	"	
"	" 114~1	"	4.230	" 112~2	"	330	"	
"	638~1	탄	75	638~1	탄	75	미아동 658	유희옥
"	638~2	"	86	638~2	"	86	" 698	박명복
"	638~28	전	33	638~28	전	33	" 658	윤희옥
"	638~29	"	16	638~29	"	16	" 658	"
"	644	대	34	644	대	34	하월곡동 90~120	이옥임
"	683~7	"	20	683~7	"	20	미아동 683	홍성호
"	703~10	"	68	703~10	"	68	" 703~56	김순용
"	703~43	"	21	703~43	"	21	" 73~43	최동근
"	703~44	"	5	703~44	"	5	" 703~44	권상규

성북구 미아동	703~52	대	52	703~52	대	52	미아동 703~56	김봉순
"	703~4	"	92	" ~4	"	92	중구오산동 206~5	유지성
"	703~38	"	52	" ~38	"	52	하월곡동 88~345	이상기
"	750	"	29	750	"	29	이문동 318~30	이성숙
"	638~30	"	47	638~31	"	5	미 동 기	
"	640~1	"	228	640~39	"	20	종암동 70~62	성육상
"	645	답	947	645~45	답	430	미아동 693	김형식
"	646	대	21	646~2	대	9	" 646	김병만
"	637~11	"	81	637~328	"	47	원동 2 가 124~10	양전석
"	637~326	"	32	" ~330	"	1	미 동 기	
"	637~44	"	1,915	" ~329	"	662	원동 2 가 124~10	양전석
"	637~12	"	24	" ~331	"	9	"	"
"	637~118	"	23	" ~332	"	7	"	"
"	637~119	"		" ~333	"		"	"
"	637~120	"	35	" ~334	"	8	"	"

소재지	분 할 전			분 할 후			주 소	성 명
	지 번	지 목	지 적	지 번	지 목	지 적		
미아동	637~123	대	11	637~335	대	2	필동2가124-10	양진석
"	" ~126	"	20	" ~336	"	12	"	"
"	" ~127	"	30	" ~364	"	16	"	"
"	" ~133	"	50	" ~337	"	5	"	"
"	"	"	55	" ~338	"	6	"	"
"	" ~134	"	10	" ~339	"	9	"	"
"	" ~137	"	18	" ~340	"	12	"	"
"	" ~138	"	13	" ~341	"	6	"	"
"	" ~141	"	24	" ~342	"	11	"	"
"	" ~142	"	70	" ~343	"	16	"	"
"	" ~145	"	31	" ~344	"	0.9	"	"
"	" ~149	"	43	" ~346	"	1.1	"	"
"	" ~151	"	16	" ~347	"	3	"	"

0785

-93-

미아동	637~153	대	21	637~848	대	5	필동2가124~10	양전석
"	" ~154	"	24	" ~849	"	8	"	"
"	" ~156	"	28	" ~350	"	11	"	"
"	" ~157	"	11	" ~351	"	8	"	"
"	" ~237	"	33	" ~352	"	11	"	"
"	" ~236	"	52	" ~353	"	29	"	"
"	" ~234	"	4	" ~354	"	2	"	"
"	" ~64	"	414	" ~357	"	25	"	"
"	"	"	414	" ~358	"	55	"	"
"	" ~295	도	2	" ~359	"		"	"
"	" ~293	대	2	" ~360	"		"	"
"	" ~290	"	98	" ~361	"	90	"	"
"	" ~304	"	43	" ~362	"	38	"	"
"	" ~305	"	63	" ~363	"	45	"	"
"	260	노	180	" ~355	도	4	"	"

소재지	분할 전			분할 후			주소	성명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미아동	260	도	180	637~356	도	3	필동 2 가 124 - 10	양전석
"	670	대	1.701	670~21	대	547.8	충북청추청주읍서정 65	민주식
"	670~16	전	16	670~24	전	0.3	미아동 산 94	박원순
"	645~1	대	232	645~46	대	98	"	"
"	670~17	전	185 ²	670~25	전	113.3	"	"
"	" ~18	대	1.257 ³	" ~27	대	262.5	명륜 2 가 1	계단범인 천주교회 미등기
"	682~1	"	1.416	682~2	"	278	"	"
"	683~2	"	18	683~8	"	14	미아동 683~2	박종식
"	" ~6	"	22	" ~9	"	0.7	" 683	윤범호
"	684~1	"	404	684~8	"	155	" 684	미등기 박명석
"	687~1	전	220	687~5	"	98	" 688	박용열
"	688~2	대	238	688~6	"	78	"	"
"	734~37	"	95	734~133	"	29	안암동 4 가 29~1	하중효

소재지	분 할 전			분 할 후			주 소	성 명
	지 번	지 목	지 적	지 번	지 목	지 적		
미아동	703~53	대	64	703~99	전	59	미아동 703	이명삼
"	" ~31	"	112	" ~94	"	65	" 736	윤금석
"	" ~45	"	14	" ~102	"	9	" 75	김송범
"	" ~42	"	13	" ~42	"	12.5	" 703~34	이범운
"	" ~40	"	25	" ~77	"	2	" 702~4	김인재
"	" ~46	"	6	" ~103	"	0.8	" 11	이구철
"	" ~30	"	92	" ~93	"	63		
"	749~3	전	92	749~30	"	1	미아동 749	방순태
"	" ~14	"	15	" ~31	"	2	" 735	미동기 윤범산
"	751	대	43	751~2	대	4	" 723	김현창
"	752~1	답	792	752~6	답	306	" 23	김지웅
"	" ~2	대	60	" ~7	대	34	영동포산1	오복수
"	759~4	"	43	759~4	"	37	미아동 723	김현창

미아동	759~5	대	39	759~5	대	31	미아동 759~5	김중준
"	" ~10	"	37	" ~10	"	31	신설동 150~10	한필이
"	" ~11	"	37	" ~11	"	33	미아동 759	임홍근
"	" ~17	"	175	" ~28	"	133	" 723	김현창
"	" ~21	"	171	" ~29	"	88	"	"
"	760	"	883	760~114	"	432	농진농 4가 78	서장위
"	776~1	"	430	776~2	"	49	미아동산 112	이재수

◎서울특별시공고제 258 호

김포토지구 획정리사업변경실시공고

당지가 시행하고 있는 김포토지구 획정리사업의 변경실시계획이 구획정리사업법 제 34 조에 의거 69.11.12 (건설부공고 117 호) 변경 인가되었기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함.

구분	택지	도로	광장	비고
당초	3,517,340 (1,063,990 평)	1,160,304 (350,990.37 평)	27,580 (8,349 평)	
변경	3,513,943 (1,062,963 평)	1,148,329 (347,368 평)	40,998 (12,402 평)	

1969. 11. 20.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공고제 261호

1. 건설부고시제 2493호 (66.6.21)로 고시된 당시 시영 남가좌동-북가좌 동간도로공사 구역내에 저촉 편입되는 토지불 수용코자 도시계획법제 12조 토지수용법제 20조 및 동법시행령 제 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함.

가. 공사 명 : 남가좌동-북가좌동간 도로공사

나. 시 영 령 : 서울특별시

다. 토지세목: 별지와 같음.

1969. 11. 21.

서울특별시

모지조사서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주소	성명	비고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북가좌동	104~2	대	90	104~4	대	37	서대문구 북가좌동 104	신삼산	
"	~3	"	221	~3	"	157	"	"	
"	103~2	"	63	103~4	"	21	"	미충기	
"	102~3	"	65	102~4	"	27	북가좌동 103	이태호	
"	107~2	"	47	107~6	"	30	귀경동 308-38	김순정	
"	~1	"	66	~7	"	23	북아현동 134-1	김일성	
"	105~1	간	52	105~10	간	11	남가좌동 205	장영진	
"	105~2	대	33	106~6	대	27	"	"	
"	~1	"	114	~7	"	41	북가좌동 105-6	이길현	

소재지	분 할 전			분 할 후			주 소	성 명	비 고
	지 번	지 목	지 적	지 번	지 목	지 적			
북가좌동	115~1	대	39	115~1	대	33	북가좌동 115-1	안성호	
"	~6	전	188	~100	전	12	남가좌동 240	강영철	
"	~2	답	32	~95	답	7	대신동 90-11	김강택	
"	~9	전	608	~96	전	223	만리동 2가 21	차배길	
"	108	"	379	108~2	"	18	북가좌동 75	김재승	
"	113~10	대	32	113~10	대	22	" 113-10	진성일	
"	113~	"	138	113~57	"	33	" 113	김일성	
"	~12	전	52	~58	전	14	"	"	
"	~16	대	29	~16	대	16	남가좌동 275-4	송금석	
"	~4	"	30	~4	"	25	연희동 182	정예환	
"	~1	분묘지전	203	~60	분묘지전	19	북가좌동 113	성무환	
"	114~1	전	306	114~17	전	176	미 동	기	
"	115~4	대	98	115~98	대	28	북가좌동 115-18	김충민	

북가동	106~4	대	25	106~4	대	25	북가 과동 13-6	박봉석
"	114~10	"	52	114~10	"	52	" 113	조만석
"	115~33	"	29	115~33	"	29	" 115-33	이해순
"	102~2	전	33	102~2	전	33	" 103	이성환
남가동	184	"	598	184~2	"	0.7	남가 과동 172	김주환
"	185	"	629	185~2	"	31.2	"	"
"	186	"	251	186~3	"	62	"	"
"	187	"	186	187~2	"	71	"	"
"	188	답	925	188~2	답	493	"	김복희
"	190~10	대	20	190~10	대	15	"	박은수 외 1명
"	190~11	전	24	190~11	전	25.7	남가 과동 182	이기남
"	191~27	대	15	191~27	대	8	" 191-27	장재익
"	191~26	"	16	191~26	"	9	" 191-26	최은배
"	191~30	"	19	191~30	"	14	" 191-30	김장만
"	191~25	답	5	191~34	답	0.7	" 225-5	김배훈

소재지	분 할 전			분 할 후			주 소	성 명	비 고
	지 번	지 목	지 적	지 번	지 목	지 적			
남가좌동	200~13	대	29	200~84	대	8	남가좌동 200-13	윤완순	
"	~15	"	13	~15	"	11	" 197-3	홍현동	
"	~14	"	16	~85	"	1	" 200-14	박용구	
"	~19	"	15	~19	"	12	" 200-19	오경환	
"	197~14	"	26	197~14	"	22.7	문래동2가 30-2	김명숙	
"	~2	"	9	~2	"	5	남가좌동 127-2	백찬기	
"	~10	"	25	~27	"	8	" 197-10	이아지	
"	~19	"	17	~19	"	13	미 등	기	
"	~6	"	38	~26	"	17	남가좌동 197-6	정연숙	
"	119~11	"	558	119~11	"	475	북아현동 23-12	서상용	
"	~33	"	63	~43	"	12	공덕동 234	김홍식	
"	~32	"	44	~44	"	10	영천동 24	손상봉	근저당설청
"	~36	"	33	~45	"	7	미아동 600	김철부	

남가좌동	119~19	대	36	119~46	대	7	남가좌동 119-19	최인규	근저당설정
"	~20	"	44	~47	"	13	" 119-20	이영식	
"	80~14	전	645	80~27	전	74	태평로 2가 23	한국회악 주식회사	근저당설정
"	115~6	"	215	115~26	"	189	"	"	
"	~11	대	29	~11	대	19	후암동 184-6	최인정	
"	~12	"	36	~29	"	4	공덕동 22-30	이정숙	
"	~5	전	1,080	~30	전	300	태평로 2가 23	한국회악 주식회사	근저당설정
"	116~6	"	140	116~8	"	31	"	"	"
"	241~14	대	53	241~14	대	49	공세동 96-4	나상호	
"	~23	"	29	~23	"	27	"	"	
"	~20	"	31	~45	"	10	"	"	
"	~18	전	587	~47	전	123	미 동	기	
"	~19	"	433	~49	"	110	남가좌동 241-4	김귀례	
"	~5	대	55	~5	대	27	" 168	공봉선	
"	167~1	"	56	167~17	"	36	" 167-1	이성섭	근저당설정

소재지	분 할 전			분 할 후			주 소	성 명	비 고
	지 번	지 목	지 적	지 번	지 목	지 적			
남가좌동	167~7	대	75	167~6	대	44	남가좌동 167-6	김대영	가동기
"	169~2	전	140	169~12	전	4	후암동 345-25	한인섭	
"	165~7	대	45	165~10	대	3	남가좌동 165	최병환	
"	~6	"	43	~11	"	9	용암동 305-16	이용기	
"	~5	"	47	~12	"	4	성동구양재동 16	김문숙	
"	~2	"	45	~13	"	15	"	"	
"	250~5	"	67	250~31	"	46	남가좌동 250-5	이영진	
"	~9	"	117	~32	"	34	북가좌동 99	이영학	
"	~6	"	71	~33	"	8	서 울	시	
"	251~1	"	342	251~19	"	256	북가좌동 100	지희섭	
"	253~2	"	36	253~4	"	0.3	남가좌동 253-2	임동백	
"	~3	"	33	~3	"	29	원효로 4가1	김병순	
"	254~1	"	153	254~5	"	38	남가좌동 278	박윤근	

근저당
조용은행

남가과동	256~4	대	43	256~21	대	7	부암동315	강낙주	
"	~8	"	43	~22	"	5	남가과동 256-8	최한수	
"	~9	"	39	~23	"	5	" 256-9	최덕순	
"	~16	"	39	~24	"	4	과주군남진면문산리63	정태운	
"	~19	"	94	~25	"	18	남가과동 256	김대영	근저당설청
"	258~70	"	183	258~70	"	180	미 등	기	
"	259~12	"	30	259~59	"	9	남가과동 259-12	석창울	
"	~13	"	29	~60	"	11	" 259-13	윤태봉	
"	~17	"	53	~61	"	27	" 259-17	최용현	
"	~20	"	54	~62	"	26	" 259-20	오찬영	
"	~29	"	33	~63	"	2	" 259-29	송병순	
"	~30	"	21	~64	"	20	" 259-30	"	
"	~2	"	70	259~65	"	42	" 259-2	이대성	
"	~4	"	52	~66	"	22	주		
"	~32	"	30	~67	"	21	남가과동 259	임관봉	주지남 세안은청

소재지	분 할 전			분 할 후			주 소	성 명	비 고
	지 번	지 목	지 적	지 번	지 목	지 적			
남좌동	260	대	78	260~385	대	25	미 등	기	
"	260~340	"	170	260~386	"	9	안양읍안양리 536	홍원희	
"	~154	"	9	~387	"	3	서 울	시	
"	~179	"	14	~388	"	10	남가좌동산 29-1	이윤식	
"	~177	"	4	~389	"	3	서 울	시	
"	~338	"	32	~390	"	28	남가좌동 260-338	김대녀	
"	~348	"	32	~391	"	19	옥인동 47-2	강완형	
"	~349	"	26	~392	"	9	남가좌동 260-349	장성준	
"	268~1	"	39	268~12	"	9	" 268-1	김광우	근저당설정
"	~9	"	31	~13	"	26	명륜동3 가 272	노진천	
"	~3	"	996	~14	"	409	서린동 81-1	손규홍	
"	269~6	"	46	269~8	"	2	남가좌동산 29	박호찬	
"	191~24	"	25	191~24	"	25	" 191-24	박성빈	

남가동	191~20	내	18	191~29	내	18	연희동 391	김계원
"	~28	"	5	~28	"	5	남가동 191-26	최근배
"	200~16	"	31	200~16	"	31	" 200-16	백재선
"	~17	"	2	~17	"	2	아현동 330-23	김양판
"	197~21	"	11	197~21	"	11	남가동 197-21	허재갑
"	~3	"	15	~3	"	15	" 197-3	윤현동
"	~22	"	24	~22	"	24	아현동 331-2	김주복
"	~17	"	16	~17	"	16	남가동 197-17	김원길
"	~7	"	16	~7	"	16	" 197-7	이화식
"	~16	"	9	~16	"	9	" 197-15	유집술
"	~15	"	7	~15	"	7	"	"
"	~9	"	18	~9	"	18	송프면문화리 135	황석
"	~8	"	21	~8	"	21	남가동 197-8	최수득
"	~18	"	19	~18	"	19	" 197-18	오기상
"	252~19	"	8	252~19	"	8	일표로 4가1	김번순

간지당
조승근

소재지	분 합 선			분 합 후			주 소	성 명	비 고
	지 번	지 목	지 적	지 번	지 목	지 적			
남가동	258~79	전	17	258~79	전	17	국		
"	260~180	대	24	260~180	대	24	남가과동산 29-1	김봉학	
"	~345	"	9	~345	"	9	명륜동 3 가 2-12	노진천	
"	~181	"	7	~181	"	7	남가과동 268-1	김광우	근저당은행
"	268~7	"	44	268~7	"	44	국		
"	258~68	"	19	258~85	"	2	국		
"	259~11	"	50	259~58	"	4	대조동 74-130	이옥동	근저당설청

◎서울특별시 광고제 264 호

청산수입 독촉장 공시송달

주소 또는 거소 : 시내 녹번동 27 - 18 이 성 방 외 32

별첨명단 (3,475,617 원)

1. 역촌지구 청산수입 독촉장 69년 수사분

가. 납입기간: 1969.10.30 ~ 11.10

나. 납입장소: 상입은행 본지점 및 시금고과 또는 당시 서부과

상기 청산수입 독촉장을 1969.10.30. 발송하였으나 수병인의 주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납입기일을 1969.12.10. 성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1항 및 지
 방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함.

1969. 11. .

서울특별시청

수납번호	불 권 지	금 액	원 주 소	성 명	비 고
2	역촌동 37-4	79,244	독년동 27-18	이성남 외 4인	
5	구산동 41	87,736	신차동 41	박상현	
8	구산동 산 52	23,460	구산동 산 52	김춘학	
10	역촌동 126-18, 12	22,295	역촌동 125	최종이	
15	구산동 36	87,429	구산동 36	고경파	
31	역촌동 160-1	153,401	중남동 427	허동환	

수납번호	물 건 지	금 액	현 주 소	성 명	비 고
32	신사동 산 6-2	15,612	백화동 5-45	이경서	
46	역촌동 147-2	105,245	역촌동 146	김택주	
52	" 151-6	109,702	" 168	본경태탕	
53	신사동 산 9	65,137	부암동	김성진	
59	" 243-4	50,722	광화문동 104	방종익	
62	" 산 19-1	30,060	신사동 산 6	이화자 외 1인	
65	" 55-3	23,282	" 55-3	이재형	
69	" 217	59,517	" 217	이광달	
36	응암동 128-2	143,262	평 동 28-12	신인식	
87	" 128-3	436,768	응암동 128	김한규	
92	" 132-4	28,706	홍은동 197	이성복	
95	" 129-17	296,442	홍계동 330-117	윤병학	
96	" 188-12	116,556	계기동 91	김유래	
98	" 127-4 외 5	57,122	응암동 133	윤택준	

105	용암동 127-13	27,268	적선동 67-3	김종대
108	" 192-6	89,836	용암동 192-6	조장휘
113	" 124-8	158,381	광덕동 96-6	양재석
114	" 124-13 외 3	204,577	승무로 4 가 12-6	이이한
117	" 198-5	82,967	용암동 산 4	최진욱
119	" 198-12	50,000	"	정용문
129	" 466-9	103,634	" 240-66	최진규
128	" 466-17	124,527	관천동 11-11	이근성
130	" 214-4 외 2	42,347	용암동 214	김덕용
131	" 214-14 외 1	270,907	신대방동 113	김영기
137	구산동 37-9	231,889	구산동 75	김형배
139	역촌동 206,207	67,995	동산동 207	상기성
140	용암동 168-13	22,593	용암동 188-3	윤태석
123	" 466-16	10,042	" 419-10	임의숙

◎서울특별시공고제 265호

청산수입 독촉장 공시송달

주소 또는 거소: 시내 회현동 1가 25 채 광 식 의 89 명

별첨 명단 (4,432,600원)

1. 수도권지구 본 청산수입독촉장 69년 수시분

가. 납입기간: 69.10.22 ~ 11.5

나. 납입장소: 상업은행본점 및 시금교과 또는 당시 서구파

상기 본 청산수입 독촉장을 69.10.22 발송하였으나 수령인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납입기일을 69.12.10.로 정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1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함.

1969. 11.

서울특별시장

수납번호	물 건 지	금 액	현 주 소	성 명	비 고
14	성수1가 13-52	22,123	회현동 1가 25	채 광 식	
17	" 13-22	21,831	수하동 17	오 윤 근	

21	영수 1 가 13-44	29.830	원효로 1 가 23-16	김진배
22	" 13-40	83.700	동익동 10-2	김교원
24	" 13-46	687	부교동 46	신세영
25	" 13-100	5.640	신당동 304-29	이태근
29	" 13-96	614	신창동 77-28	고동욱
33	" 13-92	10.978	충신동 5-77	노규홍
36	" 13-179	7.467	영수 1 가 384-2	이아기
37	" 13-80	7.136	신당동 304-172	유기홍
42	" 13-85	2.252	간위동 69	양태조
43	" 13-86	4.504	지익동 67-45	김성근
45	" 13-88	2.815	영교동 179	신노근
46	" 13-89	12.431	충신동 5 가 42-1	권영욱
48	" 13-75	14.615	문 농 39	김인식
51	" 13-72	9.168	지익동 10-2	김교승
55	" 13-68	2.292	신당동 236-216	이문교

수납번호	물 집 지	금 액	현 주 소	성 명	비 고
58	성수1가 13-55	19,380	외현동 147	최재화	
59	" 13-57	7,372	병상 1가 54	육기복	
63	" 13-62	11,520	오장동 101	김광식	
64	" 13-61	8,960	종암동 125	계우걸	
66	" 13-55	5,424	하경로 1가 13	김상순	
70	" 13-114외1필	25,756	성수 1가 3-13	김금주	
74	" 13-107	1,248	신당동 167	임번기	
78	" 13-140	14,562	중북청원군김의면 봉산리 605	김진중	
88	" 13-124	29,937	남명동 56	서문택	
94	" 13-132	34,707	인현동 2가 206	김태웅	
95	" 13-133	14,513	성수 1가 3-52	권장현	
96	" 13-113	6,176	성수 2가 282-12	최중기	
117	" 13-181	2,613	신설동 38-3	오인환	
136	" 14-31외4필	569,697	대흥동 53-8	김선옥 외 1인	

147	성수2가 301-31외1필	21,876	초동 106-12	노석복
154	" 301-8 외1필	64,478	남산동1가 14-2	김정철
155	" 301-1 외1필	201,828	상왕십리동 781	윤용범
162	성수1가 284-52	4,825	한강로 3가 40	안정익
166	성수2가 284-18외4	147,114	필운동 86	서강실
171	" 284-31	4,921	동소문동 7가 28-14	이원도
179	" 284-85외2	17,305	소공동 65-1	대지기업Co.
180	" 284-26	32,387	보문동 7가 134-10	박영서
194	" 299-56	159,614	남지보 7가 132	돈관준
196	" 299-30	4,435	방신동 131-100	엄주원
203	" 299-178	2,708	신당동 52-4	김순백
205	" 299-186	2,141	신계동 30	엄성하
206	" 299-177	22,432	연현동 2가 182	이희배
209	" 199-175	5,496	신당동 236-264	백옥금
215	" 299-163	3,447	성수1가 656	상재일

수납번호	물 건 지	금 액	현 주 소	성 명	비 고
224	성수2가 299-169	11,163	와룡동 132	김명진	
245	" 299-196	9,309	성수 1 가 656	이병길	
246	" 299-195	14,604	" 656	최 호	
250	" 299-61	2,899	신당동 52-401	이영섭	
255	" 299-21	8,947	래기동 148-5	이인수	
263	" 299-81	19,564	낙원동 92-2	정성배	
333	" 299-13	2,404	성수 1 가 656-35	김현성	의 28 인
346	" 284-66	15,970	인현동 2 가 203	이용홍	
377	" 289-15 외 1	25,333	돈암동 245-10	신현기	
378	" 289-13 외 2	42,461	현저동 413	정진실	
379	" 289-14 외 1	19,775	신설동 205-41	박춘기	
387	송정동 81-17	35,181	종로 4 가 6	김인석	
392	" 81-14	7,223	안암동 1 가 152	유시목	
398	성수2가 315-63 외 2	5,265	노선동 14-2	임정희	의 3 인

401	성수2가 315-54 외1	50,940	성수 2 가 562	박명길
402	" 315-31	58,404	장충 2 가 68-115	김봉근
413	" 321-14 외1	18,830	성수 2 가 958-17	이종원
421	" 317-10 외1	5,670	" 309-10	진봉생 외 2 인
423	" 277-18 외1	8,738	성수 1 가 656-97	고태산 외 2 인
437	" 277-21 외2	186,039	성수 2 가 746	임태근
438	" 277-51	14,436	" 238-4	이경선 외 1 인
439	" 273-17 외1	28,277	성수 1 가 353	김정현
451	" 277-26	1,416,091	교 동 51	안병협 외 1 인
458	화양 152-26 외1	5,407	용두동 1 가 210	노진삼
459	" 152-24 외1	40,319	남산동 2 가 17	허승준
465	" 152-16	9,719	불광동 280-325	홍성우
468	" 152-3	8,484	화양동 163-11	남용천
473	" 167-17 외2	88,929	" 132	김찬순
476	성수2가 277-29	23,496	성수 2 가 14-67	김명옥

수납번호	물 건 지	금 액	현 주 소	성 명	비 고
477	성수2가 277-43 의 1	19,911	하왕십리 53-2	고용봉	
479	" 273-2 의 1	18,268	성수 1 가 3	최태봉 외 4 인	
492	" 277-37	22,964	마장동 472	김백택	
492	" 277-71	39,375	성수 1 가 278	신철순	
493	" 277-38	5,201	양주군고양주면비거리299	손봉갑	
495	" 277-36	1,171	구의동 511	한근립	
497	화양 167-56 의 1	67,043	삼선동 5 가 28-3	이경무	
504	" 151-6 의 1	66,072	신당동 94-20	유성복	
505	" 151-2 의 1	84,123	광장동 339	이용조	
508	" 167-3 의 1	22,375	신당동 370-47	김길성	
509	" 167-2	1,403	성수 2 가 257	한수동	
519	송경동 79	112,182	상왕십리 436	문성인	
522	성수2가 332-14 의 1	4,253	하왕십리 127	정용성	
523	화양 152-22	94,554	용두동 270	노진삼 외 1 인	
530	성수1가 13-125	3,863	청양리 205	민별적	

☉서울특별시공고제 266 호

제 목 공 고

1. 건설부고시 제 276 호 (69.5.7) 로 확정고시된 당시 도시계획사업인 서울대학교 북단입체교차로 시설용지에 편입되는 토지를 수용료자 도시계획법 제 12 조의 구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2. 공사명 : 서울대학교 북단입체교차로 시설공사

3. 토지리 세목 (별첨조서와 같음)

1969. 11. 25

서울특별시장

토 지 조 서

번호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마포동 156-2	내	1.1	국	
2	" 156-4	"	2.2	마포구마포동 316	이 영 우
3	" 138-1	"	6	마포구 " 138-1	김 양 자
4	" 156-5	"	3.6	마포구 " 311	이 영 우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5	마포동 138-2	도	1	국	
6	" 137-4	대	48.8	신공덕동 130-25	유 준 현
7	" 135	"	15	마포동 155	장 사 숙
8	" 136-2	"	27.9	" 155	오 세 완
9	" 133-2	"	57.5	" 1-2	지 상 길
10	" 132-1	"	28	" 155	김 명 중
11	" 131-2	"	16.9	서대문구부암동 237-8	김 창 준
12	" 128-1	"	32	마포동 155	김 명 중
13	" 127-2	"	7.2	국	
14	" 125-1	"	10	국	
15	" 126-2	"	39.2	성동구신당동 340-11	김 종 섭
16	" 124-4	"	83.1	성북구삼선동 5 가 19	이 종 문
17	" 120-1	"	90	장충동 193-37	한 천 혜
18	" 310-9	"	0.4	율지로 1 가 192-11	전 농 비 료 주 식 회 사

19	마포동 311-2	대	4.1	마포동311	이영우, 박옥순
20	" 116-1	"	50.1	" 116	김 용 봉
21	" 310-10	"	12.7	" 310-3	백 낙 황
22	" 310-11	"	2.2	" 310-6, 310-7	조동희, 서운하
23	" 115-1	"	47	" 116	김 명 중
24	" 114-1	"	65	" 114-1	김 용 선
25	" 312-3	"	38	서대문구용암동 427, 113	이영희, 이영재
26	" 312-4	"	1.7	마포동 313	유 철 항
27	" 313-2	"	39.2	" 313	유 철 항
28	" 314-2	"	16.4	" 314	김 철 수
29	" 111-1	"	55	" 111-1	의 태 용
30	" 110-3	"	24.1	" 110-3	수 순 수
31	" 110-1	"	70.9	" 110-1	한 연 갑
32	" 112-1	"	1	구	
33	" 107-5	"	48	불서로 1 가 157	심 순 영

번호	자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34	마포동 107-3	대	67	불지로 1 가 157	정 순 영
35	" 107-6	"	34	신창동 60-1	최 원 주
36	" 107-4	"	33	불지로 1 가 157	정 순 영
37	" 106-2	"	41	"	"
38	" 107-7	"	19.6	"	"
39	" 106-3	"	13.8	"	"
40	" 105	"	57	마포동 105	유 철 근
41	" 104-1	"	27	북아현동 238-17	강 속 자
42	" 103-4	"	25.6	마포동 105	유 철 근
43	" 103-2	"	48.2	" 103-2	이 정 석
44	" 102-1	"	15	" 102-1	이 정 순
45	" 358-2	"	9.2	" 358	황 준 명
46	" 359-2	"	42.2	" 359	공 광 규
47	" 361-9	"	15.4	" 361-1	최 분 중

연번	물건지	지목	지적	소유자주소	성명
63	마포동 35-24	대	1.4	미	
64	" 35-25	"	1.2	대흥동 443	이금예
65	" 35-21	"	114	미	
66	마포동 35-26	대	11.9	마포동 35	김향보
67	" 35-20	"	27.6	" 35	상세모
68	" 35-19	"	9.3	" 35	"
69	" 35-18	"	2.6	" 35	"
70	" 130-2	"	15.7	" 130	임인혁
71	" 129-2	"	12.5	" 169	안성익
72	" 134	"	16	" 155	오세환
73	" 124-3	"	14.3	미	
74	" 123-1	"	2	국	
	" 122-1	"	31.3	마포동 122-1	신상춘
	" 122-3	"	45.7	" 310-4	리명천
	" 119-1	"	0.7	국	
			2,748.4		